

청약철회 요청서

■ 고객 정보

고객명		생년월일	
계좌번호		연락처	

■ 청약 철회 대상

- (투자성 상품)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, 아래 1) 또는 2)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**7일**(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)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**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**
 -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**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**
- (대출성 상품)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, 아래 1) 또는 2)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**14일**(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)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**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**
 -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**발송하고,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**

청약철회 대상 상품	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성상품 : (고난도금융투자상품, 고난도투자일임계약, 고난도금전신탁계약, 비금전신탁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성상품 : (신용거래, 증권담보대출)		
1)계약서류 제공 받은 날	년	월	일
2)계약 체결일 (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)	년	월	일

■ 확인 사항

- 본 신청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.
- 고객은 서면,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
상기와 같이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_____ (인)